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22
----------	-------

발의연월일 : 2025. 7. 22.

발 의 자 : 안도결 · 정준호 · 조인철
박정현 · 김준형 · 김영환
조계원 · 민형배 · 정진욱
민병덕 · 박균택 · 이재관
최혁진 · 권향엽 · 정일영
임호선 의원(16인)

제안이유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연금과 함께 ‘제2의 연금’의 역할을 수행하나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인출 등으로 인해 연금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그동안 성공적인 도입과 운용 결과를 보여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 운용구조를 일반화하여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

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그동안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허용되었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집합투자를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안 제2조제14호, 제23조의3제3항)

3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여 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함.

다.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안 제2조제17호 신설,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

연금기금을 운용하도록 함.

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13조제1항)

현행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

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1조의5 신설)

현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운용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운용하여야 하나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가 집합하여 이를 수행하기에 이와 같은 의무를 면제함.

바.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선택 권한 부여(안 제23조의6, 제23조의15)

중소기업이 아닌 사용자는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이 중에서 자유로이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하에 퇴직연금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려는 것임.

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와 퇴직연금기금제도(안 제24조제1항·제2항 등)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한 근로자는 자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17.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선정”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6항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의 예외)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경우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의2의 제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을 “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 한다.

①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공단에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1.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대표 또는 공단의 상임이사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3(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공단의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한다.

제23조의6의 제목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공단과”를 “퇴직연금사업자와”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은”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공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 이상(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하나로 본다)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 선택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8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단은”을 “퇴직연금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9 본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0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을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 운용”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1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

제2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후단 및 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각각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23조의15의 제목 중 “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을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1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을 각각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본문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한다.

제4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한 자

제48조제2항제1호의4를 제1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u>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6. ----- ----- -----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u>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u>	1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 ----- ----- ----- ----- ----- ----- -----.
<신 설>	<u>14의2. “퇴직연금기금제도”란</u>

	<u>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를 포함한다.</u>
15. · 16. (생략) <u><신설></u>	15. · 16. (현행과 같음) 17. “ <u>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u> ”란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조성된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u>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 -----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략)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	③ -----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
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의 계정등-----.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퇴직연금기금제도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
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
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
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퇴직연금기금제도-----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의 설정) -----

-----.

1. 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
기금전문운용사(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 선정-----

2. ~ 11. (생략)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④ (생략)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u>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u>사용자</u>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 ⑤ (생략)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2. ~ 11. (현행과 같음)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u>-----, --- ----- ----- -----.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 -----<u>사용자(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기금제도로만 운영하는 사용자는 제외한다)</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
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
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
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
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
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
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
한다.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

⑦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 ----

-----.

제21조의5(퇴직연금기금제도 가
입의 예외) 퇴직연금기금제도
에 가입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경우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4장의2 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기금전문운
용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다
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
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
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
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
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
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의 수는 같아야 한다.

1. 공단의 상임이사

2. ~ 4. (생략)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②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
와 공단에 각각 퇴직연금기금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각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와 공
단 이사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
원장이 위촉하는-----

-----.

1.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 대
표 또는 공단의 상임이사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 운용 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5에 따른 <u>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u>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략) 4. 그 밖에 위원장이 <u>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u>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장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u>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생략) <u>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u> ①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u> ② 공단은 <u>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u>	1. <u>퇴직연금기금</u>----- ----- 2. -----<u>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u>----- ----- 3. (현행과 같음) 4. -----<u>퇴직연금기금제도</u>----- ----- ----- ⑦ -----<u>퇴직연금기금</u>----- ----- ----- -----. ⑧ (현행과 같음) <u>제23조의3(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u>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u>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u>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u>퇴직연금기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u>
--	--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퇴직연금기금 전문 운용 조직을 두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전문운용사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겸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공단의 퇴직연금기금운용본부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4. 5. (생략)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의5(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1. 2. (현행과 같음)

3. -----퇴직연금기금-----

4. 5. (현행과 같음)

6. -----퇴직연금기금제도-----

② 퇴직연금사업자는-----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
여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
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
다. <단서 신설>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
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
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
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
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

제23조의6(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
-----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
서-----

-----퇴직연금사
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제도-----
-----.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개 이상(둘 이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공동으로 퇴
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설립
한 경우에는 하나로 본다)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근로자 선택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

③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
우 공단은-----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

④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내에서 가입자가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연금기금제
 도-----

-----퇴직연금기
금표준계약서-----

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

-----.

② -----퇴직연금기금제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8(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퇴직연금기금제도-----

(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
는 사람

2. (생략)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
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
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
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
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
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

----- 퇴

직연금사업자는-----

1. 퇴직연금기금제도-----

2. (현행과 같음)

제23조의9(가입기간) 퇴직연금기
금제도-----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
금 운용-----

----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퇴
직연금기금제도-----

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
단”으로 본다.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
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생략)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
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
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
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한다.

③ (생략)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 <후단 삭제>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 ① 퇴직연금기금제도

-----.

1. -----

-----.
-----퇴직연금
기금제도-----.

2. (현행과 같음)

② -----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제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제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

-----.

1. -----

-. -----
-----퇴직연금기금제도-----.

2. -----

-----.
-----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15(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기금제도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기금표준계약서-----

-----.

④ -----퇴직연금사업자---

-----.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

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

-----.

1.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기금제도-----

2.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3.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과 퇴직연금기금 운영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생략)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생략)

③ (생략)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⑤ (생략)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

1. (현행과 같음)

2. -----

퇴직연금기금제도-----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생략)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생략)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생략)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

-----.

1. (현행과 같음)

2.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3. (현행과 같음)

4.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

5. (현행과 같음)

③ -----

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u> <u>계정</u>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공단(공단의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u>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u>에 한정한다) 7. (생략)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① ~ ③ (생략)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u>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u> <u>계정</u>-----. ----- ----- -----.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중소기업</u>----- 7. (현행과 같음)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생략)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신설>

1의4. (생략)

2. ~ 5. (생략)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제23조의15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